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3월 18일
(월요일)

동북일보 5면

강남연 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

행부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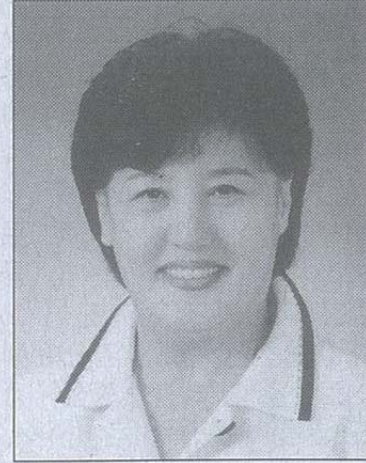
강남연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에서 집행부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공동주택 지원금이 작년에 초과 지

출된 점을 인정하며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상한액을 제외하면서 까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를 제외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통과하였다.

강남연 의원은 “번2, 3, 5단지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



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강북신문 3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강남연 의원,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 수정 등 통과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10시 제2위원회실에서 강남연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지원

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에서 집행부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공동주택 지



원금이 작년에 초과 지출된 점을 인정하며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상한액을 제외하면서 까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를 제외하는 조항 신설을 제외하는 수정안

이 통과했다. 강남연 의원은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

강북구의회 복지
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는 지난 12
일 오전 제2위원회
실에서 강남연 의
원이 '서울시 강북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
명이 이어졌다.



이번 강남연 의
원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위

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
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 제외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심의에서 집행부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공동주택 지원금이 작년에 초과 지출된 점을 인정하
며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상한액을 제
외하면서 까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해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
료를 제외하는 조항 신설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통과 시켰
다.

이날 강남연 의원은 "번2,3,5단지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으나, 개정안이 통
과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공동
주택 및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연 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강북구의회 복
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
균)는 지난 12
일 오전 10시 제
2위원회실에서
강남연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
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에서 집행부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공동주택 지원금
이 작년에 초과 지출된 점을 인정하
며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상한액을 제외하면서 까
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
여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

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
료를 제외하는 조항 신설을 제외하
는 수정안이 통과하였다.

강남연 의원은 "번2, 3, 5단지 주
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개정안
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
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